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생활 및 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 운영규정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생활 및 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은 성매매집결지 당사자의 삶·생계 전환, 주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회복 및 공간의 공공적 전환 방안을 시민의 숙의로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규정을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공론장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생활 및 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이하 '시민공론장'이라 한다)이라 부른다.

제2조【목적】
시민공론장은 시민 주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숙의를 통하여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해결 원칙과 방법을 마련하고, 성매매 종사자와 업주 등 당사자의 삶과 생계 전환, 인근 주민의 생활 안정, 지역경제 회복, 공간 전환 및 지역의 미래에 관한 시민권고안을 파주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기간】
① 시민공론장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민권고안의 이행계획과 점검체계가 확정되고 운영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운영한다.
②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일정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공개한다.

제4조【회의 장소】
① 시민공론장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파주시 관내의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개최한다.
② 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운영사무국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참석 대상자

에게 알린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그 사유를 함께 알린다.

제5조【기본 원칙】
시민공론장은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대표성, 숙의성, 인권 존중 및 안전 보장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모든 참여자는 서로 다른 경험과 의견을 존중하고, 확인된 사실과 근거에 기초하여 논의한다.

제2장 시민공론장의 구성과 의사결정

제6조【구성】
① 시민공론장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시민숙의 및 의견 형성의 주체인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괄진행자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인근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시민공론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 시민참여단 선정위원회, 조사·연구 특별팀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성매매 종사자, 업주, 건물·토지 소유자, 인근 주민과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별도의 협의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사결정】
① 모든 결정은 충분한 토론을 거친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합의가 어려운 경우 총괄진행자가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표결이 불가피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사안별로 다른 기준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④ 표결 결과와 함께 주요 반대의견 및 소수의견을 회의록과 권고안에 기록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과 위촉】
운영위원은 공론장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파주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총괄진행자의 역할】
① 총괄진행자는 시민공론장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괄진행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성립과 개최】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주 1회 개최하며, 총괄진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사무국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원칙적으로 회의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린다.

제11조【심의·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민공론장 운영의 기본계획과 세부 일정
2. 시민공론장 운영원칙 및 토론규칙
3. 시민참여단이 논의할 의제와 세부 논의 주제
4.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 선정위원회 및 조사·연구 특별팀의 구성과 역할
5. 주민설명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시민 홍보 방안
6. 시민참여단의 규모, 구성 원칙, 선정 방식 및 숙의 절차
7. 학습자료집의 작성·검토·배포
8. 시민토론회 결과의 정리와 시민권고안의 작성·채택 및 전달
9. 파주시 이행계획의 검토와 이행점검체계의 구성
10. 그 밖에 시민공론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 청취】
① 운영위원회는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파주시 담당 부서 부서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부서장 또는 담당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참고인, 현장 활동가, 연구자 및 법률·복지·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기록】
① 사무국은 매 회의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주요 발언, 결정 사항 및 소수의견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총괄진행자의 확인을 거쳐 관리한다.
③ 녹음 또는 영상기록을 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보존기간과 이용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안전, 영업상 비밀 또는 원활한 숙의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참관자는 진행자의 허가를 받아 발언하고 회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③ 회의 결과와 주요 자료는 파주시 홈페이지 등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 비공개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공개한다.

제15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시민참여단

제16조【용어】

① ‘시민참여단’이란 시민공론장이 주관하는 사전학습과 시민토론회에 참여하여 의제를 숙의하고 의견을 형성하고 판단하는 시민을 말한다.
② ‘시민토론회’란 시민참여단이 정해진 의제를 대상으로 균형 잡힌 정보를 학습하고, 질의·응답과 상호토론을 거쳐 판단과 권고 의견을 도출하는 숙의형 토론을 말한다.

제17조【구성】

① 시민참여단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파주시에서 생활·노동·영업하는 시민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시민참여단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규모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과 무작위 추출 등 적절한 방식을 병행하고, 지역, 성별, 연령 및 사안에 대한 기본 입장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한다.
④ 시민참여단은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⑤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선정위원회】

① 시민참여단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통계, 조사방법론, 갈등관리 등 관련 분야의 소수 전문가로 구성하며, 총괄진행자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표집 기준, 모집 절차, 결원 보충, 이해충돌 판단 및 최종 명단 확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④ 선정위원회 논의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9조【역할】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론장 의제에 관한 학습과 숙의
2. 운영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의 사전학습
3. 사전·사후 설문조사 참여

4. 시민토론회 참여와 질의·토론
5. 의제별 의견 형성과 판단 등 시민권고안의 기초가 되는 결과 도출

제20조【활동 기간】
시민참여단의 활동 기간은 참여단 선정일부터 시민권고안을 파주시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21조【운영】
① 시민참여단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② 시민토론회는 균형 잡힌 정보 제공, 충분한 질의 시간, 소그룹 토론, 입장 변경의 자유 및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한다.
③ 시민토론회 진행자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지 않고 모든 참여자의 고른 발언을 지원한다.

제5장 자문단

제22조【구성】
자문단은 여성·인권, 사회복지, 주거, 노동·직업전환, 보건·의료, 법률, 도시계획·도시재생, 금융 및 지역경제, 부동산·공공개발, 조사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23조【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쟁점과 의제 설정을 위한 자문
2. 조사·연구 결과 검토, 학습자료집의 사실성·균형성 검토
3. 시민토론회의 발제자 또는 토론자 참여
4. 시민참여단의 현장 및 온·오프라인 질의에 대한 답변
5. 대안별 비용, 효과, 한계 및 법·제도적 실행 가능성 검토
6. 기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자문

제6장 검증단

제24조【구성】
검증단은 검증단장을 포함하여 신망 있는 인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검증단원은 공론장과 관련하여 다른 직책이나 역할을 겸할 수 없다.

제25조【역할】
검증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공론장 활동의 공정성·투명성 관련 이의와 민원 접수
2. 접수 사안의 사실 확인과 운영위원회 보고 및 개선 권고
3. 자료 제공, 시민참여단 선정 및 시민토론회 진행의 공정성 점검
4. 개인정보와 참여자 안전 보호 절차 점검
5. 운영위원회 등 회의 참관
6. 그 밖에 공론장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감시

제26조【자체 규정】
검증단은 이의신청 처리, 조사 절차, 결과 공개 및 비밀 유지 등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의원단

제27조【구성】
① 의원단은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4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의원단을 구성할 때에는 정당과 지역의 균형을 고려한다.

제28조【역할】
의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시민공론장에 서면으로 전달
2. 공론장 결과의 조례·예산·정책 반영과 제도화에 관한 자문
3. 시민권고안과 이행계획의 실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

제8장 운영사무국

제29조【구성】
① 시민공론장의 원활한 실무 지원을 위하여 운영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실무 인력은 파주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과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역할】
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의 알림, 회의장 마련, 회의록 작성 및 문서 관리
2. 시민 홍보, 참여자 모집, 장소·안전·접근성 지원
3. 자료 수집, 학습자료집 제작 및 홈페이지 공개 지원
4. 시민토론회 운영과 퍼실리테이터 지원
5. 예산 집행, 수당 지급 및 계약 관리
6.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그 밖의 실무

제9장 운영 원칙

제31조【정보 제공】
① 파주시는 의제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민공론장 자문단, 시민참여단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 제공 가능한 대체자료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연구】
① 운영위원회는 사실에 기초한 생산적 토론을 위하여 조사·연구 특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성매매 종사자, 업주, 건물·토지 소유자 등의 규모와 생활·노동·주거·소득·건강·채무 현황
2. 기존 지원제도의 이용 실태와 효과, 생계·직업·업종 전환 수요
3. 인근 주민과 상인의 지역경제 의존도 및 집단 내부의 다양한 입장
4. 토지·건물의 소유관계, 위반건축물 등 법적·물리적 현황
5. 공공매입 비용과 재원, 재개발·공공개발·도시재생 가능성
6. 주민 재정착, 상인 보호,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7. 철거 또는 정비 이후 단기·중기·장기 공간 활용 방안과 국내외 전환 사례

제33조【학습자료의 작성 원칙】
① 시민참여단을 위한 학습자료는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도표로 작성하고, 서로 다른 입장과 근거를 균형 있게 담는다.
②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이해관계자의 주장, 전문가의 분석·평가, 미확인 또는 논쟁 중인 사항, 선택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학습자료집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중대한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정정 사실과 수정 내용을 공개한다.

제34조【논의 내용의 공표】
① 주민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시민공론장의 진행 상황, 주요 결정 및 시민토론회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② 공표의 형식, 시기 및 내용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공표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낙인과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5조【운영 경비】
시민공론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파주시가 부담한다. 예산 집행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며,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면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제36조【회의비와 참여수당】
① 파주시는 참석 위원과 자문·검증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회의비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파주시는 시민참여단에게 소정의 참여수당과 교통비·돌봄비 등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자문 등의 의뢰】
시민공론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연구, 법률 검토, 관리 및 운영 지원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파주시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① 모든 참여자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거나 낙인찍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의 신원, 얼굴, 음성, 연락처, 건강·채무·주거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와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③ 필요한 경우, 언론 취재, 촬영 및 사례 공개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당사자의 동의 철회권을 보장한다.

제39조【안전과 참여 보장】
① 시민공론장은 협박, 모욕, 성희롱, 혐오표현, 신상공개 및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사자가 안전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비공개 간담회, 익명 의견 제출, 대리진술, 상담 연계 등 필요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장애, 언어, 돌봄, 생업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40조【신의성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참여자 사이의 상호 존중, 충분한 숙의 및 합의 정신을 우선한다.

제10장 시민권고안과 이행점검

제41조【시민권고안】

① 운영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권고안을 작성한다.
② 시민권고안에는 공론장 추진 경과, 제공된 주요 정보, 시민토론회 결과, 합의 사항, 소수의견, 운영위원회의 제안을 포함한다.
③ 시민권고안은 파주시장에게 전달하며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42조【파주시 이행계획】
① 파주시장은 시민권고안을 존중하고, 권고 사항별 반영 여부와 그 이유 및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예산, 담당 부서, 추진 일정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이행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파주시는 그 요청을 적극 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한다.

제43조【이행점검단과 해산】
① 운영위원회는 시민권고안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이행점검단을 구성한다.
② 이행점검단과 파주시는 점검 대상, 지표, 주기, 공개 방식 및 개선 절차를 포함한 이행점검계획과 이행협약을 마련하여 공개한다.
③ 이행점검단이 구성되고 이행점검계획이 확정되면 시민공론장의 활동은 종료되며, 운영위원회와 그 산하 기구는 해산한다. 다만, 기록물의 정리·이관과 회계 정산에 필요한 업무는 완료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하고 총괄진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
이 규정은 제43조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비밀 유지, 개인정보 보호, 기록물 보존 및 회계 정산에 관한 조

항은 그 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민공론장 준비를 위하여 이루어진 결정과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